

노동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 대폭 개선

7월 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PQ) 시 산재율 감점 제도가 없어지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5월 노동부는 이 같은 PQ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축소되고, 산재은폐시 1

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재해율 산정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간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 2 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함께 석면정책 심포지엄 개최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정 및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석면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 김동일 성균관대 교수 등이 석면의 유해성과 사용실태 및 해외 규제 동향 등을 주제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위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석면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국민 건강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최호춘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석면제품 금지를 위해서는 대체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이 확보되어

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신브레이크 안상식 이사는 “저가의 수입 석면제품이 대량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제조·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석면제품의 제조·수입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 중·개축 시 석면관리의무를 강화하였다. 석면은 인체에 흡입될 시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 – 검찰 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재해다발 업종은 2005년도 재해율 상위 10개 제조업과 5개 비제조업으로서 목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과 별목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93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474개소를 사법조치하고 9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